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78호(號) 1933(昭和 8)년 12월 12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0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12월 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2월 1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조선(朝鮮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. 갱목[坑木]을 제[除]함). 상판(箱板: 절조[切組]¹⁾함이 있는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난(發驛欄) 「주을(朱乙),」의 아래[下]에 「합수(合水),」를 추가(追加)함.

1) 역자 주: 절조(切組)는 건축 공사에서, 목재·철재 등을 기둥이나 들보에 짜 맞추기 위해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